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90

발의연월일: 2025. 8. 19.
발 의 자 : 장 길 천 의원

1. 개정이유

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사용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실종 예방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의 변경

나. 조례 용어의 변경(실종아동 → 실종아동등)

다. 실종아동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원 범위 확대(안 제2조제1호)

라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신설(안 제5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: 2025. 8. 22. ~ 2025. 8. 26.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실종아동의”를 “실종아동등의”로, “실종아동과”를 “실종아동등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아동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
 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
   다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

아동등을 말한다.
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.

4. “보호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·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실종아동”을 “실종아동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실종아동”을 “실종아동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실종아동”을 각각 “실종아동등”으로 한다.

1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종아동”을 “실종아동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실종아동”을 “실종아동등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실종아동”을 “실종아동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1호 중 “아동, 실종아동”을 “실종아동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실종아동”을 “실종아동등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실종아동등의 ---------- - 실종아동등과 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아동”이란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“아동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2. “보호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.	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

	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아동등을 말한다.
<신 설>	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.
<신 설>	4. “보호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·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.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------ 실종아동등----------.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예방·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----------실종아동등----------.
② 예방·지원계획에는 다음 각	② ----------
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----------.
<신 설>	1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
1. 실종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·보호시설에 대한 지원	2. 실종아동등----------
2.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	3. 실종아동등----------
3.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4. ---------- 실종아동등---
제5조(예방·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의 예방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제5조(예방·지원사업) ① ---------- 실종아동등---------- ----------.
1.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	1. 실종아동등의 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
3.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	4. ---------- 실종아동등---
<신 설>	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	제6조(지원대상) ----------

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----------.
1.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, 실종아동 및 그 보호자	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실종아동등 ---------- 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상호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실종아동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, 교육청, 경찰,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제7조(상호협력체계의 구축) --- --- 실종아동등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4조제2항에 해당

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**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(02-450-1150)	아동학대대응팀장 박남준 (02-450-7390)	담당자 김인혜 (02-450-7831)

붙임1	개정사항 반영 전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
 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
   다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아동등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.
4. “보호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
및 인가 · 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예방 · 지원계획”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 ·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
2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 ·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
3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
4.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예방 ·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 ·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
3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
4.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
2.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제7조(상호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, 교육청, 경찰,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2	관계법령

법규명	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
  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
   다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아동등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.
4. “보호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·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.